

청주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19가단239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7. 16.

주 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11,259,276원 및 그 중 110,066,906원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2019. 4. 12.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이 2017. 9. 1. 체결한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 2. 22. 접수 제50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11,259,276원 및 그 중 110,066,906원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6. 10. 27.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135,000,000원, 보증기한 2017. 10. 26.(이후 보증기한은 2018. 10. 25.로 변경됨)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2016. 10. 27. (주)C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A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 이행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6. 2. 1. 이후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피고 A는 채무초과상태이던 2017. 9.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 2. 22. 접수 제503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신용보증사건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에 대하여 2018. 7. 9. 부동산 가압류 등 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8. 12. 26. (주)C에 110,066,906원(원금 107,761,225원 + 이자 2,305,6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868,210원을 지출하였고, 324,160원의 미수위약금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111,259,276원(= 대위변제금 110,066,906원 + 법적절차비용 868,210원 + 미수위약금 324,16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10,066,90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4. 1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 A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지 약 2개월 정도 지난 2017. 11.경부터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에 수차례 가압류가 마쳐지다가 결국 2018. 7. 9.경 피고 A에 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가 가까운 장래에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8. 12. 26. 원고가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공장은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A는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피고 A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17. 10. 13.부터 2018. 7. 27.까지 피고 A에 육류를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이 459,619,467원에 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일자를 2017. 9. 1.로 소급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등기부에 기재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17. 9. 1.에는 피고 B의 물품대금채권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18. 2. 22.에는 채권최고액에 가까운 447,035,698원의 물품대금이 발생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실질적으로 2018. 2.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A는 2018. 2.경까지 피고 B에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③ 2017. 11.경부터 이 사건 공장에 수차례 가압류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피고 A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